

(동해해양경찰서)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



고시

[시행 2026. 8. 5.] [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26-1호, 2026. 8. 5., 제정]

해양경찰청(해양안전과), 033-741-2448

1. 저동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

가. 소재지: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, 저동항 남방파제

나. 지정일: 2026. 8. 5.

다. 통제기간: 2026. 8. 5. ~ 지정 해제 시 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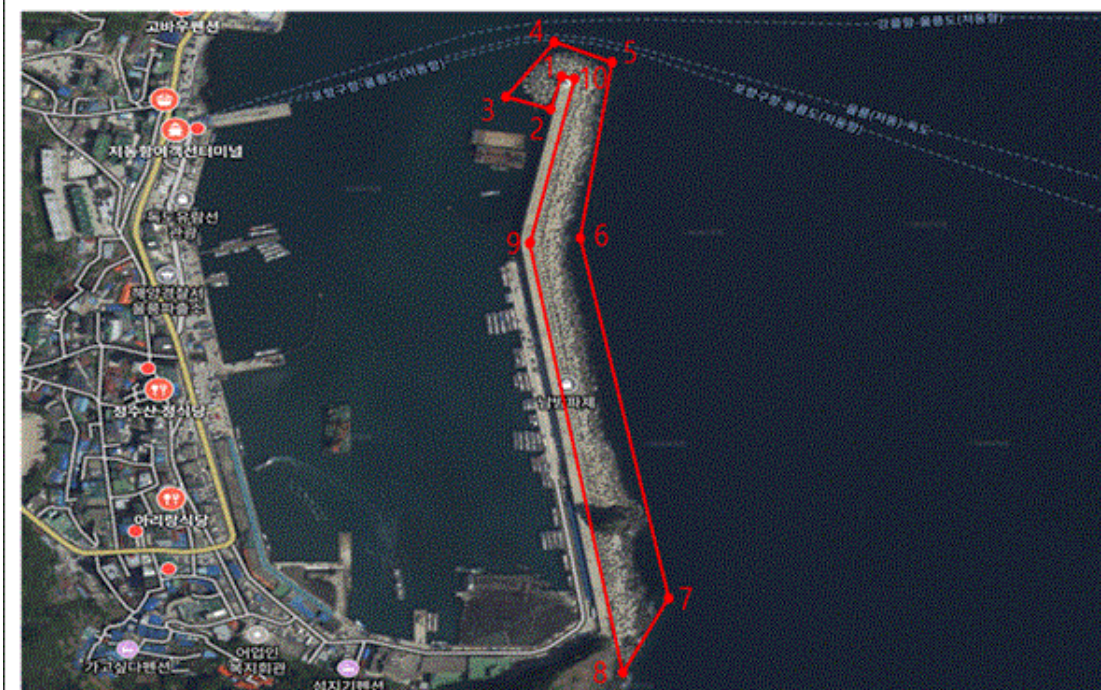
라. 통제시간: 연중, 모든 시간

마. 대상: 모든 활동객(단순 출입 포함)

바. 통제범위: -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북위 37°29'47.89", 동경 130°54'48.28" | 2. 북위 37°29'46.63", 동경 130°54'47.82" |
| 3. 북위 37°29'47.40", 동경 130°54'45.51" | 4. 북위 37°29'49.01", 동경 130°54'48.01" |
| 5. 북위 37°29'47.81", 동경 130°54'49.96" | 6. 북위 37°29'42.37", 동경 130°54'48.66" |
| 7. 북위 37°29'29.84", 동경 130°54'52.41" | 8. 북위 37°29'27.57", 동경 130°54'50.30" |
| 9. 북위 37°29'42.30", 동경 130°54'47.26" | 10. 북위 37°29'47.75", 동경 130°54'48.65" |

위 각 호(1~10)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



2. 천부항 제1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

가. 소재지: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, 천부항 제1방파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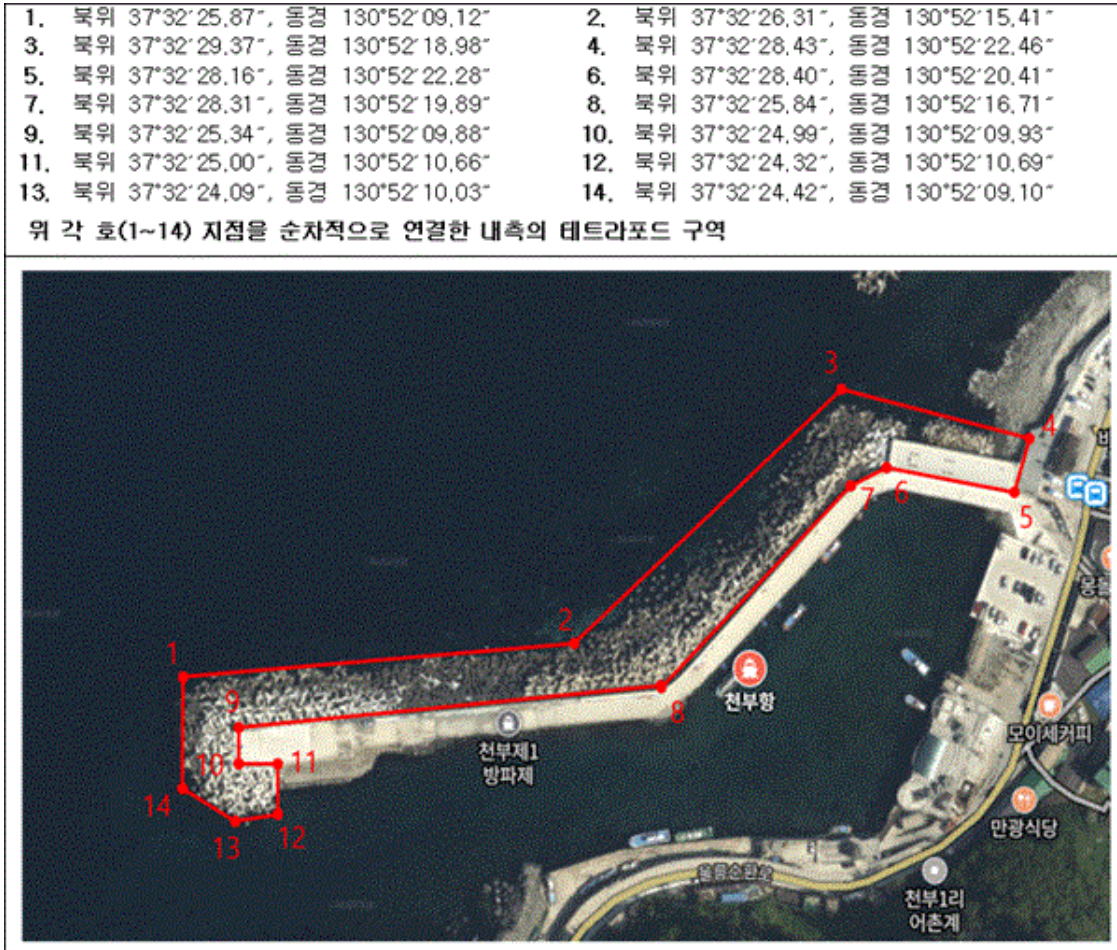
나. 지정일: 2026. 8. 5.

다. 통제기간: 2026. 8. 5. ~ 지정 해제 시 까지

라. 통제시간: 연중, 모든 시간

마. 대상: 모든 활동객(단순 출입 포함)

바. 통제범위: -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



3.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

가. 소재지: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621,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

나. 지정일: 2026. 8. 5.

다. 통제기간: 2026. 8. 5. ~ 지정 해제 시 까지

라. 통제시간: 연중, 모든 시간

마. 대상: 모든 활동객(단순 출입 포함)

바. 통제범위: 1), 2) -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

1) 현포항 북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북위 37°31'37.48", 동경 130°49'18.32" | 2. 북위 37°31'45.83", 동경 130°49'22.94" |
| 3. 북위 37°31'47.91", 동경 130°49'25.84" | 4. 북위 37°31'46.96", 동경 130°49'40.68" |
| 5. 북위 37°31'45.08", 동경 130°49'40.54" | 6. 북위 37°31'45.15", 동경 130°49'38.28" |
| 7. 북위 37°31'45.92", 동경 130°49'38.37" | 8. 북위 37°31'45.83", 동경 130°49'39.75" |
| 9. 북위 37°31'46.14", 동경 130°49'39.66" | 10. 북위 37°31'46.87", 동경 130°49'27.92" |
| 11. 북위 37°31'46.32", 동경 130°49'25.56" | 12. 북위 37°31'45.26", 동경 130°49'24.07" |
| 13. 북위 37°31'37.12", 동경 130°49'18.91" | |

위 각 호(1~13)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



2) 현포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북위 37°31'43.34", 동경 130°49'50.65" | 2. 북위 37°31'49.73", 동경 130°49'42.65" |
| 3. 북위 37°31'49.53", 동경 130°49'42.34" | 4. 북위 37°31'48.69", 동경 130°49'43.50" |
| 5. 북위 37°31'48.01", 동경 130°49'42.65" | 6. 북위 37°31'49.60", 동경 130°49'40.62" |
| 7. 북위 37°31'51.14", 동경 130°49'42.51" | 8. 북위 37°31'43.79", 동경 130°49'51.80" |

위 각 호(1~8)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



4. 참고사항

가. 문의처: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033-741-2448)

나. 과태료: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자는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다. 예외사유: 공사, 인명구조 등 공적인 사유에 의한 출입의 경우 적용 제외

1) 항만개발, 구조물 보수,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출입

- 이 경우, 동해해양경찰서 유선 문의 및 공문 확인 필요

2)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기관(해양경찰, 소방, 경찰, 군 등)의 출입

5. 재검토기한: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칙 <제2026-1호,2026.8.5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